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1일, 박형수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12. 1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

12. 26.)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12. 27.) 상정·대체토론·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박형수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명 혹은 상호를 대여한 행위와 관련한 등록취소와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6조제1항제7호 및 제74조제4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하는 행위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가 정보통신공사를 수급·시공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자에 대해서만 제재규정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현)

성명·상호를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대여받은 자도 제재됨을 분명히 하고, 그 밖에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함.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2.

제 안 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성명·상호·등록증·등록수첩을 대여받은 자도 제재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항을 신설함(제24조제2항 신설).

제24조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인용조문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함(제66조제1항제7호의2 및 제74조제4호의2 신설, 안 제66조제1항제7호 및 제74조제4호 수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상호·등록증·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를 “제7호·제7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 7의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성명·상호·등록증·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한 경우

안 제7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 4의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성명·상호·등록증·등록수

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한 자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4조(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24조(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u>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u> <u>②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상호·등록증·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① ---- ----- ----- ----- ----- -----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① ---- ----- ----- ----- ----- -----

여 영업정지를 명
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제7호·
제13호 또는 제15
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제24조를 위반하
여 타인에게 등록
증이나 등록수첩
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
려서 사용한 경우

-----.

-----.

1. ~ 6. (현행과 같
음)

7. 제24조를 위반
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상
호·등록증·등
록수첩을 빌려주
거나 이를 사용
하여 공사를 수
급 또는 시공한
경우

<신설>

-----.
-----제7호·
제7호의2-----

-----.

1. ~ 6. (개정안과
같음)

7.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
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
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
하게 하거나 등
록증 또는 등록
수첩을 빌려준
경우

7의2. 제24조제2항
을 위반하여 타인
의 성명·상호·
등록증·등록수첩
을 사용하여 공사

8. ~ 15. (생략) ② · ③ (생략)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24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준 자 또는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	8. ~ 1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4조(벌칙)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4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준 공사업자와 이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한 자 <신설>	<u>를 수급 또는 시공한 경우</u> 8. ~ 15. (개정안과 같음)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제74조(벌칙) ----- ----- ----- ----- -----. 1. ~ 3. (개정안과 같음)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4의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
--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u>의 성명·상호·</u> <u>등록증·등록수첩</u> <u>을 사용하여 공사</u> <u>를 수급하거나 시</u> <u>공한 자</u> 5. (개정안과 같음)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상호·등록증·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를 “제7호·제7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 7의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성명·상호·등록증·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한 경우

제7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4의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성명·상호·등록증·등록수
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u><신 설></u>	제24조(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누구든지 타인의 성명·상호·등록증·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제7호·제1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제24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① ----- ----- ----- ----- ----- -----제7호·제7호의2-----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u>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u> <신 설> 8. ~ 15. (생 략) ② · ③ (생 략)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4. 제24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u>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또는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u> <신 설> 5. (생 략)	<u>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u> 7의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u>타인의 성명 · 상호 · 등록증 · 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한 경우</u> 8. ~ 1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4조(벌칙)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u>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u> 4의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u>타인의 성명 · 상호 · 등록증 · 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한 자</u> 5. (현행과 같음)
---	--